

수원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가합196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환

변론 종결2024. 9. 25.

판결 선고2024. 11. 2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10. 29.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 1) B은 2022. 8. 10.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2022고단793)에서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C, D 등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E', 'F'(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에 관하여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범죄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2) 이에 B이 항소하여 2022. 11. 10.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노2921)이 확정되었다.
- 3) 원고 산하 구리세무서장은 2022. 4. 1. B에 대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850억 원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 4) 원고 산하 동화성세무서장은 2022. 12. 9. B에 대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종합소득세 약 978억 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은 이에 대하여 2023. 2. 17.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3.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4.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B은 2024. 6. 13.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24구합67703)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 5) B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계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1	종합소득세	2015	2015.12.31.	587,015,560	631,041,680
2	종합소득세	2016	2016.12.31.,	16,014,116,810	17,215,175,530
3	종합소득세	2017	2017.12.31.	43,392,681,830	46,647,132,940
4	종합소득세	2018	2018.12.31.	25,068,942,060	26,949,112,680
5	종합소득세	2019	2019.12.31.	12,773,881,060	13,731,922,090
종합소득세 합계		97,836,637,320	105,174,384,920		
6	부가가치세	2015.07	2015.12.31.	656,440,120	740,136,220
7	부가가치세	2016.01	2016.06.30.	3,950,405,160	4,454,081,700
8	부가가치세	2016.07	2016.12.31.	10,950,066,970	12,346,200,470
9	부가가치세	2017.01	2017.06.30.	33,325,329,580	37,574,309,070
10	부가가치세	2017.07	2017.12.31.	5,253,700,210	5,923,546,960
11	부가가치세	2018.01	2018.06.30.	8,289,664,970	9,346,597,150
12	부가가치세	2018.07	2018.12.31.	12,040,381,910	13,575,530,540
13	부가가치세	2019.01	2019.06.30.	10,553,950,260	11,899,578,820
부가가치세 합계		85,019,939,180	95,859,980,930		

1	종합소득세	2015	2015.12.31.	587,015,560	631,041,680
합계	182,856,576,500	201,034,365,850			

나. B의 이 사건 아파트 매도

1) B은 2017. 9. 18. G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787,000,000원에 분양받고, 2019.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2019. 10. 29. B의 형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2.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9. 11. 21.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2. 10.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J, 채권최고액 4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2,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 4, 7호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2019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과세기준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으로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이고, 비록 2019년도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B이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중국에서 C, D 등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 등에 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B은, 종합소득세 관련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산하 동화성세무서장이 2022. 12. 9. 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약 978억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원고의 B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B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가 이미 950억 원에 이르고,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B이 조세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의 B에 대한 부가가치세 950억 원의 조세채권은 존재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로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나) 한편, 피고는,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9. 6월경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D, L이 국내에서 검거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고, B이 당시 중국에 거주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B의 협조 없이는 피고에게 명의이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중국에 거주하였던 B과 피고 또는 B의 어머니인 M와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있다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본래 M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다시 피고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M의 재산으로 회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M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B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B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있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매도인인 N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당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B의 책임재산이 되므로, B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시어머니 M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M가 시동생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받았을 뿐, B의 채무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채무자 B의 형수로, 인척관계에 있는데,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의 시어머니 M의 부탁으로 B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쳤다는 취지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실체가 없이 등기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시어머니 M 소유의 ○ 아파트를 매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 아파트가 매도되지 않아 대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평소 다니던 절의 스님이 며느리인 피고 명의로 등기로 옮기면 쉽게 매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고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라면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대신에 직접 제3자와 매매를 추진하면 될 것이어서, 직접 이전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높은 점을 감수하고 단순히 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B의 형수인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경위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

③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9. 6월경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D, L이 국내에서 검거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B은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급히 처분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고, 실제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아파트가 J에게 매도되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9.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며,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2019. 11. 21. J에게 매도되어 2019. 12. 10.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J, 채권최고액 4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그 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가액은 830,000,000원이고,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 또한 위 가액임은 별다른 다툼이 없다.2)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가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가액배상 범위는 830,000,000원이 된다.

라. 소결론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현호

판사김리사

판사김선호

별지

1) 주문과 같이 선포한다.

2) 피고는 2019. 11. 21.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830,000,000원의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다.